

「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2014. 12. 19.(금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9일

(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)

가. 제안이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등의 권한이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(법률 제11445호, '12.5.23.)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문홍열)

가. 검토내용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전환 권한이 도지사가 아닌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현행 조례의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나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권한이 시장·군수에게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